

7.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9-334호 1999. 10. 26.

개 정 이 유

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준도시지역의 운동·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가 폐지되고 시설용지지구에 통합됨에 따라 준도시지역 용도지구 입안기준을 새로이 정하고, 토지이용계획확인(신청)서에서 확인할 사항에 하천구역 및 전원개발예정구역등을 새로이 포함하려는 것임.

주 요 골 자

- 가. 도로법에 의한 연도구역 및 고속교통구역이 폐지됨에 따라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 입안기준중 도로법에 의한 연도구역 및 고속교통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.
- 나. 준도시지역의 운동·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를 폐지하고 시설용지지구에 통합함에 따라, 운동·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의 입안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용지지구의 입안기준을 새로이 정함.
- 다. 낙동진흥법에 의한 낙동지대 및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가 폐지됨에 따라,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의 입안기준중 낙농지대 및 초성조성지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.
- 라. 토지이용계획확인서(신청)서에서 확인하여야 할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사항

에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및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또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상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등을 새로이 포함하고, 군용항공기지법상 군용항공기지는 비행안전구역과 군용 항공기지구역으로 구분하여 표기토록 함